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41

발의연월일: 2021. 5. 11.

발 의 자 : 송재호 · 김병욱 · 김수흥

김영호 · 김의겸 · 남인순

맹성규 • 안호영 • 양원영

윤관석 • 이상헌 • 이원택

정성호 · 홍익표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,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 가의 현황파악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예방접종 등 의료지원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,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의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바,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분만에관여한 의사·조산사 등에게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부과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분만에 관여한 의사·조산사 등이 출생 후 7일 이내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심사평가원은 출생통 보서를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, 출 생신고를 받은 시·읍·면의 장은 송부 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4조 의3 및 제44조의4 신설).

법률 제 호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4조의3 및 제4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3(출생의 통보) ① 분만에 관여한 의사·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출생 후 7일 이내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 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이 조에서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에 출생통 보서(의사·조산사의 경우 출생증명서, 의사·조산사 외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의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. 이하 같 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출생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, 그 밖에 출생통보서의 제출.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제44조의4(출생신고의 확인)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받은 시·읍·면의 장은 이를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출생통보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출생통보의 적용례)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재 정 안 제44조의3(출생의 통보) ① 분만 에 관여한 의사·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출생 후 7일 이내에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 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 원(이하 이 조에서 "심사평가 원"이라 한다)에 출생통보서(의 사·조산사의 경우 출생증명서, 의사·조산사의 경우 출생증명서, 의사·조산사 외에 분만에 관 여한 사람의 경우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출생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출생지를 관할 하는 시·읍·면의 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통보서의 제출 및 송부는 전 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

#